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40
----------	-------

발의연월일 : 2026. 8. 11.

발 의 자 : 엄태영 · 이소희 · 이만희
김상훈 · 이상휘 · 박충권
안철수 · 권영진 · 윤한홍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촉진과 공동이용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 부품 조달에 필요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 및 산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 농촌지역은 고령농의 비율이 높아 농업기계 의존도가 높은 반면, 농업기계가 고장난 경우 수리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장거리 운반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적기에 수리를 받지 못해 영농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농업기계 출장수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별 지원 수준에 편차가 크고 안정적·지속적인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및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에 대하여 이동

수리소 및 고정 수리소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의 농업기계 수리(현장점검, 예방정비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이동 및 고정 수리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이동 및 고정 수리소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리소의 운영 및 부대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동 및 고정 수리소의 운영과 지원의 범위·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 지역의 농업기계 수리(현장점검, 예방정비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이동 및 고정 수리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u>
<u><신 설></u>	<u>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이동 및 고정 수리소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리소의 운영 및 부대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신 설></u>	<u>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u>

<u>동 및 고정 수리소의 운영과 지원의 범위 · 절차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